

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

| | | | |
|-------|--|------|----------|
| 소송종류 | 행정소송 | 법원명 | 인천지방법원 |
| 사건번호 | 2022구합○○○○○ | 사건유형 | 기타 |
| 원고 | □□□ | 피고 | 인천광역시교육감 |
| 판결선고일 | [1심]2022. 11. 11. 원고일부승 | 비고 | |
| 사건개요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원고는 현재 ○○고등학교에 재직중인 교사임. 피고 교육감은 원고와 관련된 신고 사안 4건에 대하여 2022. 1. 22. 성고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고, 2022. 2. 21. 원고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였음. ○ 원고는 위 각사안의 성고충심의위원회 회의록 및 사안처리결과보고서의 내용에 대하여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2. 3. 31. 원고에게 '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' 및 '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4호 및 제6호'에 의한 비공개대상임을 이유로 거부처분을 함. ○ 원고는 이 사건 회의록 및 결과보고서는 원고 등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 원고 등에 대하여 징계처분 의결 요구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개최된 성고충심의위원회 회의록일 뿐으로, 비공개에 해당되는 부분을 제외하고 일부에 대하여만 공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피고는 전체 내용에 대한 비공개 처분을 한 바, 비공개할 경우 오히려 원고의 방어권에 현저한 침해를 가져올 우려가 상당하여 이 사건 처분은 피고의 재량을 현저히 일탈·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며 소를 제기함. | | |
| 주 문 |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피고가 2022. 3. 31.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중 별지2 목록 기재 정보에 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취소한다. 2.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. 3. 소송비용 중 1/10은 원고가,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. | | |
| 판결요약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정보공개법 제13조 제5항에 따라 원고에게 서면으로 불복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혔고, 원고의 불복절차 이용에 지장이 없어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없음. ○ 피고는 이 사건 각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인지에 대해 증명하지 않고,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음. 또한 이 사건 정보 중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는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음. | | |

| | |
|-----|--|
| | <p>○ 원고가 이미 이 사건의 신고인, 피신고인 및 참고인이 누구인지 알고 있는 것으로 보여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피해학생 및 참고인의 피해가 증가한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, 해당정보의 공개로 달성할 수 있는 원고의 권리 구제 이익이 더 큰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함.</p> |
| 결 론 | <p>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</p> |